

# 돌봄정책기본법안

## (손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602
----------	-------

발의연월일 : 2025. 12. 24.  
발의자 : 손솔 · 김대식 · 최혁진  
임미애 · 전종덕 · 이주희  
이용우 · 윤종오 · 정혜경  
윤준병 · 용혜인 · 김종민  
한창민 · 전진숙 · 정춘생  
의원(15인)

### 제안이유

우리 사회는 인구구조 변화, 1인가구 증가,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인해 생애 전반의 돌봄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돌봄체계는 대상별 · 부처별로 분절되어 있고, 공공돌봄의 비중이 낮아 가족에게 과도한 돌봄 부담이 전가되고 있으며, 이는 여성에게 집중되는 구조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음.

또한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 부족,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지역 간 서비스 격차 등으로 인해 누구나 적정한 돌봄을 제공받고, 돌볼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국가책임 체계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통합적 돌봄정책의 기본틀을 확립하고, 돌봄서비스 제공체계의 공공성 강화, 돌봄노동자의 권리 보장, 돌봄자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돌봄

을 받을 권리와 돌봄 권리의 보장을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모든 사람이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좋은 돌봄을 받고 보편적이고 평등하게 가족등을 돌볼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돌봄정책 수립·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사람에게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봄 권리의 보장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모든 사람은 인간다운 삶과 사회참여를 위해 돌봄을 받을 권리와 일·돌봄·휴식이 조화된 환경에서 돌봄 권리의 가짐(안 제3조 및 제4조).
-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서비스 제공 의무, 돌봄자 지원, 공공성 강화책임을 가짐(안 제5조).
- 라. 노인·장애인·아동 등 영역 간 돌봄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생애주기별 돌봄서비스를 개발·제공함(안 제11조 및 제12조).
- 마.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 돌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함(안 제13조).
- 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봄지원주택 공급 및 주거환경 개선 정책을 수립·시행함(안 제14조).
- 사. 돌봄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되, 재정상 필요 시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일부 비용 부담을 가능하게 함(안 제15조).

- 아.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접근성 확대를 위해 적정 수의 돌봄제 공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함(안 제17조).
- 자. 국공립 돌봄제공기관은 직접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 위탁된 국공립 돌봄제공기관은 단계적으로 직접운영으로 전환하며, 민간위탁 시에도 공공성·노동권 보호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18조).
- 차. 돌봄제공기관의 인력·시설 기준 마련, 이용자 및 노동자 차별금지, 노동관계법령 준수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 카.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임금·노동조건 개선, 노동권 보장 등 돌봄노동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7조).
- 타. 돌봄자의 성별 편중을 완화하고, 일·돌봄·휴식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36조 및 제37조).
- 파. 국가의 돌봄정책 방향·목표·추진과제 등을 담은 돌봄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공표하도록 함(안 제43조).
- 하. 돌봄정책위원회 설치 등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조정·협력·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돌봄정책을 통합적·민주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안 제47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종덕의원이 대표발의한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

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55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돌봄정책기본법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사람이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좋은 돌봄을 받고 국가의 책임과 지역사회의 지원 위에서 보편적이고 평등하게 가족등을 돌볼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사람에게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서비스”란 아동, 노인, 장애인, 출산을 전후한 여성, 환자 등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안전관리, 신체적·정신적 활동 지원, 가사 보조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2. “돌봄노동자”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이용자”란 돌봄노동자로부터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4.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하 “돌봄제공기관”이라 한다)이란 돌봄

노동자로 하여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돌봄노동자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돌봄서비스 제공 플랫폼은 돌봄제공기관으로 본다.

5. “돌봄서비스 제공 플랫폼”(이하 “돌봄제공플랫폼”이라 한다)이란 돌봄노동자 및 돌봄제공기관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이를 전자정보 형태로 기록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6. “가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본인 또는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또는 혼인의 실질을 가진 합의에 따른 밀접한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부모 또는 조부모

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다. 본인 또는 나목의 사람의 자녀·입양자녀 또는 손자녀

라.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아동

마. 그 밖에 돌봄과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인 또는 기타 친밀한 관계의 사람

7. “무급 돌봄자”(이하 “돌봄자”라 한다)란 돌봄이 필요한 가족등을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8. “돌봄 청소년·청년”이란 연령이 39세 이하인 돌봄자를 말한다.

9. “돌봄서비스 관리기관”(이하 “돌봄관리기관”이라 한다)이란 돌봄 서비스를 관리하고 이용자와 그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및 돌봄

노동자의 보호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돌봄을 받을 권리) 모든 사람은 생애주기 전반에서 안전을 보장 받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제반 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돌봄 제공자와의 상호신뢰 및 감정적 유대에 기반한 좋은 돌봄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돌볼 권리) 모든 사람은 일·돌봄·휴식을 균형 있게 유지하고 제반 사회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가족등을 돌볼 권리를 가진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돌봄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그 공공성을 강화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람이 돌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돌봄자를 지원하며, 돌볼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주의 노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자에게 적합한 통합돌봄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모집·채용부터 노무관계 종료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돌볼 권리의 실현을 저해하는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돌볼 권리의 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돌봄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회를 유지·존속시키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정책 수립에 반영할 것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확대함으로써 돌봄자의 무급 돌봄 부담을 경감시킬 것
3. 사업주의 돌볼 권리 보장을 지원함으로써 돌봄자간의 돌봄 부담이 보편적이고 평등하게 분담되도록 촉진할 것
4. 돌봄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함으로써 돌봄노동자가 존중받으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5. 돌봄정책은 돌봄노동자의 대표성을 보장하고 이용자·돌봄제공기관·돌봄자 및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수립·시행할 것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돌봄정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2장 돌봄서비스 제공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돌봄서비스 제공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사회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하는 데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진다.

제10조(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서비스의 지속성과 안정성 확보,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 이용자와 돌봄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1조(각 돌봄서비스 사이의 격차 축소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장애인·아동 등 대상에 따라 분절된 각 돌봄서비스 사이의 격차를 줄이고, 각 돌봄서비스의 양과 질을 고루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생애주기 등에 따른 돌봄서비스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애주기와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지역 돌봄 통합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돌봄을 비롯한 사회서비스를 연계·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 돌봄 통합지원체계의 정착과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주택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며 돌봄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돌봄지원주택(돌봄 등 지원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주택을 말한다)의 확보·제공 및 주거 환경 개선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돌봄서비스의 무상 제공 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누구나 무상으로 돌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예산 및 기금을 확

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재정상 필요한 경우 이용자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돌봄서비스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돌봄서비스 제공 시 차별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서

비스를 제공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종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

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가족 내 돌봄 부담,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성 정체성, 학력,

병력, 국적, 체류자격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돌봄제공기관의 설치·운영 및 인·허가 등

제1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돌봄제공기관 설치 · 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수 및 분포,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돌봄제공기관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돌봄제공기관 직접운영 원칙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돌봄제공기관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에 위탁된 국공립 돌봄제공기관이 있는 경우 이를 직접운영으로 전환할 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국공립 돌봄제공기관이 직접운영으로 전환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계약의 형식을 불문한다)에 대하여 직접운영 전환 이후의 계약의 계속적 체결 또는 연장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된 국공립 돌봄제공기관의 수탁자가 변경되는 때에는 해당 돌봄제공기관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계약의 형식을 불문한다)에 대한 계약 유지를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제19조(민간 돌봄제공기관 인 · 허가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돌봄제공기관(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 · 운영하는 돌봄제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 운영을 인가 또는 허가할 경우 이 법과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원 향상

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의 협동조합 또는 「민법」 제32조의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는 돌봄제공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돌봄제공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민간 돌봄제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돌봄제공기관이 이 법과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절차를 관계 법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21조(인력 및 시설 기준) 국가는 돌봄제공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민간 돌봄제공기관의 설치·운영을 인가 또는 허가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대우받고 돌봄노동자가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과 관련 법률에 따른 노동조건에서 노동권을 보장받으며 업무상 재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시설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22조(돌봄제공기관의 차별 금지) 돌봄제공기관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이용자와 돌봄노동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

다.

제23조(돌봄제공기관의 노동관계 법령 준수) 돌봄제공기관은 해당 기관에 노무를 제공하는 돌봄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돌봄제공기관에 대한 국공립 전환 또는 폐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돌봄제공기관이 이 법과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더 이상 관계 법령상 기준에 따른 돌봄을 제공하기 어렵거나 돌봄노동자에게 안전한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민간 돌봄제공기관에 대한 국공립 전환 또는 폐쇄 등 필요한 조치 및 절차를 각 해당 법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25조(돌봄제공기관 종사자 인권교육) 돌봄제공기관은 이용자와 그 보호자(이하 “이용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돌봄제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돌봄관리기관 설치 · 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서비스 관리, 이용자등에 대한 인권교육 및 돌봄노동자의 보호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돌봄관리기관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시 · 도 사회서비스원 또는 제1항

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한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사회서비스원을 돌봄관리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제1항에 따른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4장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향상

제27조(돌봄노동의 가치 인정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노동이 여성이 전담하는 단순 비숙련 노동으로 간주되어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로 고착된 문제를 개선하여야 하며, 돌봄노동자가 돌봄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고 고용 안정과 노동권 행사를 보장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돌봄노동자의 성별 편중 완화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노동자가 여성에 편중되어 있는 현실을 개선하여 돌봄노동자가 성별마다 고르게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노동에서 고정된 성별 분업이 완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외국인 돌봄노동자에 대한 평등 대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돌봄노동자가 인종, 피부색, 민족, 국적, 언어, 체류자격 등을 이유로 내국인에 비하여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돌봄노동자가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돌봄노동자가 가족등을 돌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돌봄노동자에 대한 고용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돌봄노동자를 대표하는 자 및 외국인 돌봄노동자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30조(돌봄노동자에 대한 적정임금 등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노동자가 적정임금 및 최소근로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돌봄제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1조(돌봄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임금 기타 노동조건에 관하여 실질적·지배적 영향력을 가진 자와 단체교섭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32조(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비용의 예산 반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노동자의 적정임금 등 노동조건 개선, 근로시간 면제 등 노동권 보장, 안전 보호 및 사회보험 보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및 기금의 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3조(돌봄노동자의 인정체계 확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노동자가 전문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경력 및 전문능력 인정체계를 수립하고, 돌봄노동자에게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이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4조(돌봄노동자의 경력 인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노동자의 경력 및 전문능력에 따른 돌봄의 질 향상을 반영한 합리적인 급여 제도를 마련하고, 돌봄제공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돌봄노동자 인권보호 조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노동자가 이용자등의 괴롭힘으로 인권을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이용자등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등의 괴롭힘이 계속될 경우 2인 이상 공동으로 돌봄을 제공하도록 하거나 돌봄서비스 이용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이용자 비용부담분을 증액하는 등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등의 괴롭힘에 의한 돌봄노동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장 돌봄자에 대한 지원

제36조(돌봄자의 성별 편중 완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자가 여성에 편중된 역사적·구조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성별마다 평등하게 돌봄을 분담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7조(돌봄자의 균형 있는 삶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자가 일·돌봄·휴식을 조화롭게 유지하며 균형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8조(가족등 돌봄 필요시 휴직 등) ① 사업주는 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그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족등을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휴직, 휴가, 휴업, 노동시간 단축 및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에서 주간근무로의 전환 요구 권리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가족등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 등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 돌봄에 따른 휴직 등으로 인하여 감소된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돌봄자에 대한 차별 해소) ① 사업주는 돌봄자가 돌봄 이행으로 인하여 채용·임금·근속·평가 등 직업활동의 전 영역에서 차별 및 불이익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자가 직업활동에서 받는 돌봄 차별 및 불이익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균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0조(돌봄자에 대한 정당한 평가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자의 돌봄이 직업활동에서 정당하게 인정받는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확산시켜야 한다.

제41조(돌봄자에 대한 사회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자에

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자에게 발생하는 재해, 노령 등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보험을 확대하고 가입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2조(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청소년·청년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각 영역에서 고른 기회를 누리고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장 돌봄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43조(돌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국가의 돌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돌봄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수립된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2. 돌봄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산업, 교육, 복지 또 는 인구정책 등의 동향에 관한 사항

3. 돌봄의 수요와 공급 전망에 관한 사항
  4. 국공립 돌봄제공기관의 설치·운영 및 민간위탁된 국공립 돌봄제 공기관의 직접운영 전환에 관한 사항
  5. 민간 돌봄제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돌봄 통합지원에 필요한 돌봄노동자의 규모에 관한 사항
  7. 돌봄노동자의 양성과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8. 외국인 돌봄노동자에 대한 고용정책 및 차별금지와 생활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9. 돌봄자의 실태 파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돌봄 청소년·청년의 실태 파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제7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12. 그 밖의 돌봄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돌봄 관련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4조(광역돌봄정책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제47조제1항에 따른 광역돌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

쳐 지역 주민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과 돌봄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등에 관한 광역돌봄정책실행계획(이하 “광역돌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광역돌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광역돌봄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돌봄제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시·도지사가 광역돌봄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5조(기초돌봄정책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은 매년 제47조제1항에 따른 기초돌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역 주민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과 돌봄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등에 관한 기초돌봄정책실행계획(이하 “기초돌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초돌봄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는 제4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46조(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돌봄이용자 및 돌봄노동자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규모, 돌봄의 내용 및 새로운 돌봄 필요 등에 관한 사

항

2. 돌봄제공기관의 분포, 규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돌봄노동자의 규모, 노동조건, 처우 및 업무상 재해 등에 관한 사항
4. 무급 돌봄의 가치 및 성별 분담 정도에 관한 사항
5. 돌봄자의 분포, 돌봄 시간, 돌봄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부담 정도 등에 관한 사항
6. 돌봄 청소년·청년의 돌봄으로 인한 교육훈련 및 고용 등의 불이익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돌봄정책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7조(돌봄정책위원회 등) ① 돌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돌봄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광역돌봄위원회를,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에 기초돌봄위원회를 둔다.

-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회경제적 상황과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돌봄정책에 관한 사항
3. 제48조제2항에 따른 돌봄 관련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안정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돌봄관련 법령 개선 사항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돌봄과 관련하여 심의 ·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책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이 각각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하고, 위원 중 한 성이 100분의 60을 넘을 수 없다.
1. 이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2. 돌봄제공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돌봄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돌봄자를 대표하는 사람. 다만, 돌봄 청소년 ·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5. 돌봄 문제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전국 시 · 도지사 협의체에서 추

천하는 사람

- ④ 정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전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는 정책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 ⑥ 정책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광역돌봄위원회 및 기초돌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8조(돌봄 관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안정화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돌봄 관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안정화, 노동조건 향상 및 공공성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돌봄 관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범위, 분류 및 평가기준의 마련
2. 돌봄 관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3. 돌봄 관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3년 이상 지속된 경우 향후 안정적 추진을 위한 사업 추진체계 개선

4. 돌봄 관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 및 그 평가에 따른  
제도개선이나 예산반영에 관한 의견 제시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돌봄 관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방안을 통보받은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그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의 설계·운영 방안을 조정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반영 결과를 보건복  
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돌봄 관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 기관·단체는 사업의 안정  
화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매년 자신이 수행하는 돌봄 관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사업실  
적, 예산서, 운영지침 등 현황 통보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시한 사업개선과 예산반영 의견에 대한 결과  
보고

3. 그 밖에 돌봄 관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안정화 등을 위하여  
정책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돌봄 관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 또는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사업의 안정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제시한 의견 또는 권고의 내용과 그에 따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